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 이유

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및 원산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,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('22.1.1.시행예정)에 따라,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 필요 사항 규정 (안 제6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붙임(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)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, 범위 등)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(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(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(이하 “양수자”라 한다) 유통 신고의무가 있음을 거래명세서에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 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을 농림축산

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내용, 신고방법,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.
제3조(원산지의 표시방법) 「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 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 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	제3조(원산지의 표시방법) 「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 률」----- ----- -----.
1.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: 「농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 다)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 에 따라 표시하되, 세부적인 표 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 지에 따를 것	1. ----- ----- 「농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」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6조의2(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 력 신고, 범위 등) ① 유통이력신 고의무자(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 라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있는 자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유통이력 관리수입농산물등(법 제10조의2

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(이하 “양수자”라 한다) 유통 신고 의무가 있음을 거래명세서에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의무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내용, 신고방법,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 조사공무원증

(뒤 쪽)

조사공무원증

소속/직급 :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
 년 월 일

기관장명의 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[별지 제2호서식] 조사공무원증

(뒤 쪽)

조사공무원증

소속/직급 :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
 년 월 일

기관장명의 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

연 락 처

(044) 201 - 2276